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7. 23.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호
----------	------

제출연월일 : 2021. 7. 2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의 일부 사무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 각종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 및 접수 등 현재 읍·면·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읍·면·동에 위임되어 실제 수행하는 있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
(안 별표 3, 별표 4)

- 장애인등록업무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
- 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

나. 주택임대차 사업 관련 업무 추가(안 별표 3, 별표4)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다. 직제순으로 조례순서 변경(안 별표 3, 별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년 6월 10일 ~ 6월 30일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운영지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자치행정과장	김 민 영
	서 무 팀 장	김 순 옥
	담 당 자	민 기 석 (746-5225)

[별표 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열 린 홍보실	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자치행정과	1	읍·면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읍·면장의 관내 출장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4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5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안 전 총 괄 과	1	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2	재해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제48조
	3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세 무 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3조
	4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5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주택,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조사	「지방세법」 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6	지방세 자진신고 처리(읍·면분)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회 계 과	1	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관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2	시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불용물품 매각처분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5	배정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
	6	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민원과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2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00세 행복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생활 지 원 과	1	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2	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복지인권과	1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2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법」 제15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5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35조, 제65조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4
문 화 체 육 과	1	체육공원 관리·운영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환 경 과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면에 한함)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
	2	쓰레기 투기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산 림 공 원 과	1	시유재산(임야)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건 설 과	1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2	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친화 재 생 과	1	가로(보안)등 관리 - 보안등신설 접수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 설치·관리 규칙」 제8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토지정보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건소	1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별표 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열린홍보실	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자치행정과	1	동 근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동장의 관내 출장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 「논산시 별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4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5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안전총괄과	1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세 무 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3조
	4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주택·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 조사	「지방세법」 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회 계 과	1	불용물품 매각처분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급원인 행위와 지출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
	3	지정공공시설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주민생활 지 원 과	1	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2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다음 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복지인권과	1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2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법」 제15조
	3	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5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법」 제18조, 35조, 65조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4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토지정보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 건 소	1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현				행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치 행정과	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자 치 행정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읍·면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읍·면장의 관내 출장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지원과	1	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2	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전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4
100세행복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광체육과	1	체육공원 관리·운영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3조
	4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조사	「지방세법」 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6	지방세 자진신고 처리(읍·면분)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안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안전총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세무과	1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제13조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시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
	6	삭제	삭제
민원과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세행복과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회계과	1	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관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2	시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불용물품 매각처분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5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 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6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7	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토지정보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민원과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2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환경과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면역 한함)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
	2	쓰레기 투기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공원과	1	시유재산(임야)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개정안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인권과	1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2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법」 제15조
	3	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 (제)발급 및 변동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5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부·요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35조, 제65조
주민생활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1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2	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친화재생과	1	가로(보안)등 관리 - 보안등신설 접수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 설치·관리 규칙」 제8조
안전총괄과	1	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2	재해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제48조
	3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보건소	1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정안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평생교육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림공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시친화재생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지정보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건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열린홍보실	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열린홍보실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치행정과	1	동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자치행정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동장의 관내 출장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를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원과	1	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2	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전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 4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당해 등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3조
	4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조사	「지방세법」 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안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안전총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세무과	1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제13조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급원인 행위와 지출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민생활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회계과	1	불용물품 매각처분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3	지정공공시설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토 지 정보과	1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 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건설과	1	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안 전 총괄과	1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보건소	1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정안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 지 인권과	1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2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법」 제15조
	3	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 (제)발급 및 변동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5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예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법」 제18조, 35조, 65조
평 생 교육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 지 정보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건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 추계 결과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 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김 민 영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2. 1., 2013. 1. 25., 2015. 8. 3., 2016. 6. 30., 2016. 12. 30., 2019. 6.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2019. 6. 4.>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1. 소득·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주민등록증
 -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